

■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[별표 4] <전문개정>

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(제16조와 관련)

연번	교육과정	단위	인정 시간	비고
1	미국EMS 연수교육	3주	40	
2	전문 구급대원 I 과정	4주	40	
3	전문 구급대원 II 과정	1주	35	
4	전문 구급대원 III 과정	1주	35	
5	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	2주	40	
6	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	1주	35	
7	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	3주	40	
8	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	9주	40	
9	구급대원 신규 임용자 교육	2주	40	
10	구급대장 등 구급지휘관 교육	1주	35	
11	환자평가 및 분류 교육	1시간	1	
12	구급대원 보수교육(응급구조사, 간호사, 구급전문교육사)	1시간	1	
13	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	1차시	0.5	최대30시간
14	응급의료센터, 응급의료기관,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의료 관련 교육, 학술대회, 세미나, 심포지움, 집담회, 토론회 등	1시간	2	
15	기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협회 및 관계기관 등의 구급업무 및 응급의료관련 교육(세미나)등	1시간	1	
16	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			
	가.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	1시간	1	
	나. 재난현[별지 제1호서식] <삭 제>장 구급대응훈련 참가(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포함)	1시간	1	최대5시간
	다. 구급관련 강의 등 (국가·지방·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구급 관련 강의, 소방청 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위원, 국가·지방·유관기관 구급관련 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 증빙자료에 의함)	1시간	1	
	라.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참가	1시간	1	최대8시간
18	소방청, 시·도 소방본부(소방학교),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구급지도의사·전문의 또는 구급전문교육사에 의한 직장 구급교육훈련	1시간	1	
19	소방청, 소방본부 등 구급의학 발전, 응급처치 매뉴얼 등 제,개정 등 T/F 활동 등 학술활동 시	1시간	1	
20	응급구조학, 간호학, 보건학 등 응급의학 관련 대학, 대학원 과정 등 수강 시	1학기	40시간	